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공고 제2025-150호

-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

2025년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기업 (추가)모집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전문가 상담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기업애로 SOS자문 서비스를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8. 5.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모집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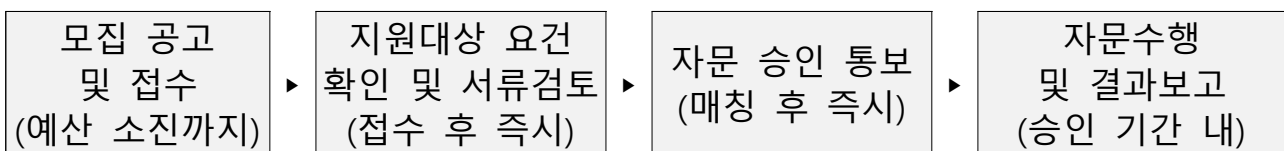
- 지원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경영·기술 상 애로가 있는 도내 중소기업(중기업+소기업)
 - ※ 지원제외 대상 : ① 붙임2의 별표1 상담 지원대상 제외업종
 - ② 2024년 수혜기업(1년 유예 적용)
- 지원내용 :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자문위원 활용 법률, 세무, 수출 회계, 노무 등 1:1 매칭 무료상담 및 문제 해결방안 제시
- 지원규모 : 3업체 내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60만원 한도 내 자문료 지원
- 지급방식 : 검토 결과에 따라 진흥원에서 자문위원에게 직접 지급

상담유형	방법	지원규모	1회 지원한도	지원금액	비고
일반상담	비대면(유선, 화상)	업체당 1회	1회 10만원 한도	업체당 10만원	-
현장상담	대면(현장방문)	업체당 2회	1회 25만원 한도	업체당 50만원	-

※ 자문료 외 교통비 등은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절차 : 1회당 1인 자문위원 지정, 1개 자문 분야 지원

- 자문위원별 수행 한도 제한으로 원하는 위원과 매칭이 불가능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① 상담유형 선정

○ 신청기업은 상담방법을 사전에 결정하며 복수로 신청 가능

구분	지원내용	비고
일반상담	· 자문방법 : 유선 및 화상회의 · 지원한도 : 업체별 1회(100,000원) · 과업기준 : 1일 1회, 별도 시간제한 없음	비대면 방식
현장상담	· 자문방법 : 기업 현장방문(도내 사업장) · 지원한도 : 업체별 2회(1회/250,000원) · 과업기준 : 1회당 최대 3시간 이내 자문	도내 사업장 현장방문
[상담예시1] 일반상담(1회) ⇨ 현장상담(2회) = 총 3회 지원 [상담예시2] 현장상담(2회) ⇨ 일반상담(1회) = 총 3회 지원 [상담예시3] 현장상담(1회) ⇨ 일반상담(1회) ⇨ 현장상담(1회) = 총 3회 지원		

② 자문분야 선정

○ 신청기업은 1회 상담에 대해 1개 자문 분야만 선택 가능

NO	자문분야	자격요건	NO	자문분야	자격요건
1	창업	경영지도사 등 9개	7	회계/세무	세무사 등 6개
2	경영전략	기술지도사 등 8개	8	무역(수출입)	관세사 등 6개
3	마케팅/디자인	경영지도사 등 6개	9	기술	기술사 등 10개
4	법무	변호사 등 5개	10	특허	변리사 등 5개
5	금융/재무	경영지도사 등 5개	11	정보화	기술지도사 등 7개
6	인사/노무	공인노무사 등 7개	12	생산관리	기술사 등 10개

③ 자문위원 선정

- 신청기업은 전문가 POOL을 참고하여 희망 자문위원 2명을 기재 후 신청
- 운영기관은 희망 자문위원 2명을 대상으로 매칭 진행
- 신청기업이 미등록 자문위원을 희망하면 대상자를 신청 전 기업애로 SOS자문단에 사전 등록해야 자문 승인 가능. 단, 대상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④ 지원요건 검토

-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붙임2 상담 지원대상 제외업종
- 지원한도 : 업체별 60만원 한도(일반 1회, 현장 2회)

⑤ 승인결과 통보

- 상담승인 내용 및 수당기준 등을 참여기업과 자문위원에게 공문으로 통보

⑥ 자문수행 및 만족도 조사

- 참여기업과 자문위원은 사업 기간 내 자문 수행을 완료해야 함
- 참여기업은 자문위원 결과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해야 하며 미응답 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음

3

접수방법

- 문 의 처 :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043-230-9754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 소진 시까지
 - 공고/서식 : 홈페이지(www.cba.ne.kr) ⇨ 사업공고/신청 ⇨ 기업애로지원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가능(kjm41@kakao.com)
- ※ 아래 서식을 차례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순번	서식명	비고
1	기업애로 SOS자문단 일반상담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4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기업용)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기 업 정 보							
기 업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번 호				업 태 / 업 종			
주 요 생 산 품				설 립 년 월			
홈 페 이 지				근로자수(외국인)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최근 3 년 매 출 액		2024	백만원	2023	백만원	2022	백만원
최근 3 년 수 출 액		2024	백만원	2023	백만원	2022	백만원
본 사 주 소		()					
공 장 주 소		()					
담당자 정보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연 락 처 (H / P)		E - m a i l	
신 청 내 용							
자 문 분 야 (최 대 1 개)		☐ 창업		☐ 금융/재무		☐ 기술	
		☐ 경영전략		☐ 인사/노무		☐ 특허	
		☐ 마케팅/디자인		☐ 회계/세무		☐ 정보화	
		☐ 법무		☐ 무역(수출입)		☐ 생산관리	
		☐ 기타()					
애 로 사 항		* 어떠한 분야 대한 자문이 필요한지 명확히 작성(전문가 매칭 시 필요) (예시) 특허출원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 부족하여 자문 필요 (예시) 주52시간제 적용에 관한 노무 상담 필요 등					
희 망 자 문 위 원 1		(등록번호) 불임3 POOL 참조			(성 명) 불임3 POOL 참조		
희 망 자 문 위 원 2		(등록번호) 불임3 POOL 참조			(성 명) 불임3 POOL 참조		
자 문 방 법 (복 수 선택 가능)		☐ 일반상담(유선, 화상회의 등) 1회			☐ 현장방문(도내 사업장) 2회		
상기와 같이 『2025년 기업애로 SOS자문단 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 (인)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3.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애로사항(별지)

필요시 별지 작성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기업용)

2025년도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귀 진흥원이 당사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는 아래와 같이 귀 진흥원이 당사의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귀 사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안내
- ☐ 자문위원 매칭 및 맞춤형 상담 지원
- ☐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
- ☐ 차후 사업의 개선을 위한 담당자(기업별 이용자) 개별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신청업체 : 회사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요생산물, 매출액, 수출액 등
- ☐ 담당자 정보 : 성명, 부서명,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 2025년도 기업애로 SOS자문단의 업무처리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하며, 개인정보 처리 거부권 행사 시 효력 소멸

4. 개인정보 동의 거부 시

- ☐ 신청 접수 후 연락처 부재로 서비스 이용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 ☐ 신청대상 및 조건 확인 시 추가적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업의 지원내역 관리가 용이하지 못하여, 차후 지원내역 확인 시 확인시간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2월 일

대표자 : (인)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① 중소기업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 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②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세부내용

- 중소기업확인서에 따른 소상공인
- 2024년도 수혜기업(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준) ※ 1년 유예 적용
- 농업, 임업 및 어업(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7中), 주류(46331) 및 담배(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 소매업(47111~47999) (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55111~56229)
- 금융 및 보험업(64110~66209), 부동산업(68111~68223)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58219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01~71209)
- 경영컨설팅(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71532)
- 수의업(73100), 보건업(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91221~91229), gambling 및 베팅업(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91291~91299)
- 협회 및 단체(94110~94990)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111~96999)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 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업종 대상